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4조 [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]


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 · 제1항 본문·제1호~제5호 · 원문 발췌

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6. 28.>

1. 견고한 구조로 할 것
2. 심한 손상 ·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
3.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
4.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**15센티미터 이상**의 간격을 유지할 것
5. 폭은 **30센티미터 이상**으로 할 것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조문 화면: 시행 2025. 9. 1. · 대조 2026. 10. 29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4조 [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]


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 · 제1항 본문·제6호~제8호 · 원문 발췌

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6. 28.>

6.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
7.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**60센티미터 이상** 올라가도록 할 것
8.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**10미터 이상**인 경우에는 **5미터 이내마다** 계단참을 설치할 것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조문 화면: 시행 2025. 9. 1. · 대조 2026. 10. 29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4조 [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]


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 · 제1항 본문·제9호 가·나목 · 원문 발췌

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6. 28.>

9.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**75도 이하**로 할 것. 다만,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**90도 이하**로 하고, 그 높이가 **7미터 이상**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

가.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: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**2.5미터**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

나.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: **한국산업표준**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**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**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**한국산업표준**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**전신안전대**를 사용하도록 할 것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조문 화면: 시행 2025. 9. 1. · 대조 2026. 10. 29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4조 [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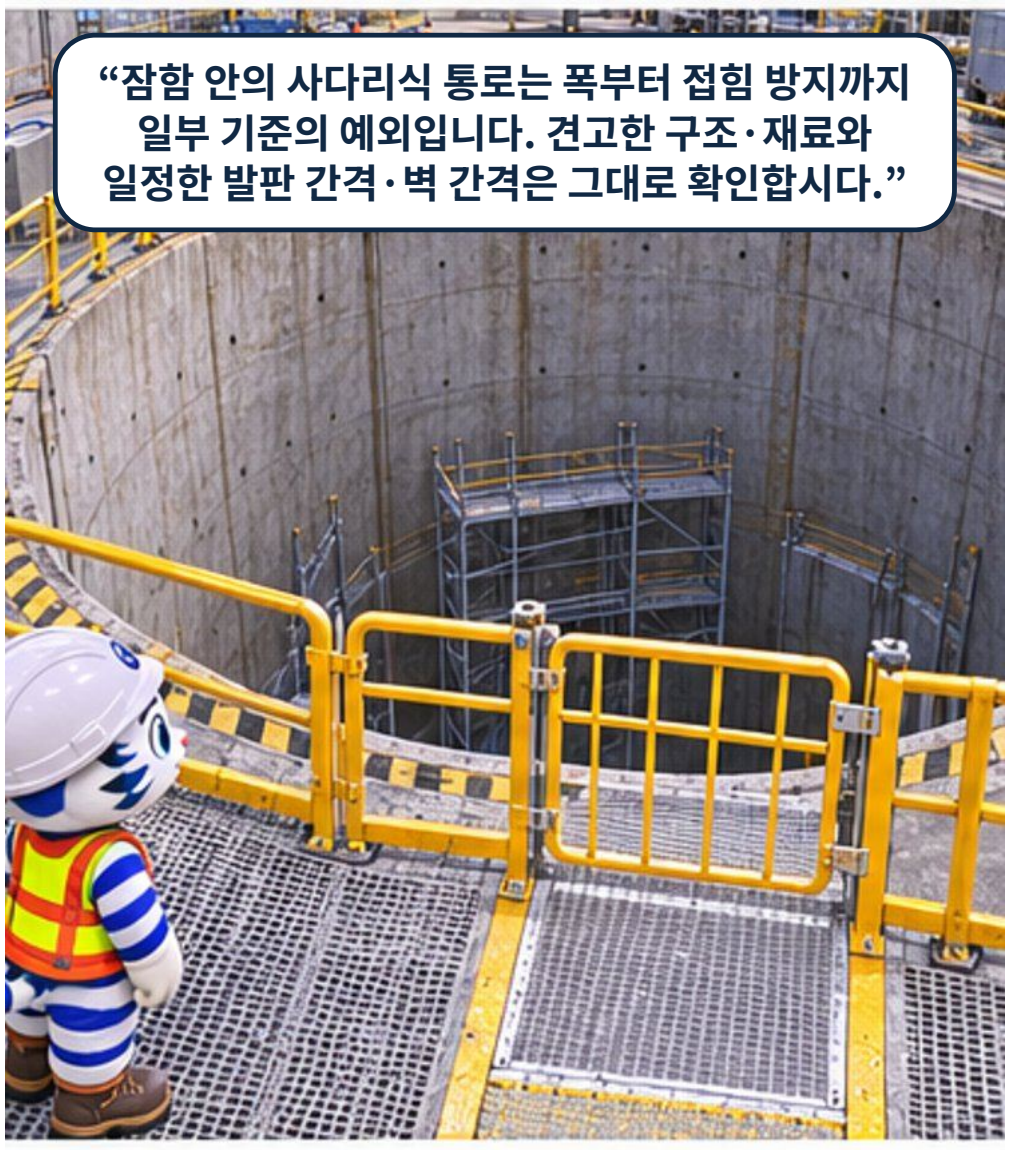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 · 제1항 본문·제10호·제2항 · 원문 발췌

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6. 28.>

10.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

② 잠함(潛函)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 · 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(건조 · 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**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**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조문 화면: 시행 2025. 9. 1. · 대조 2026. 10. 29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4조 [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]

벽과 발판 사이 15cm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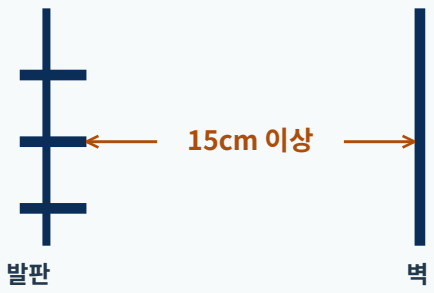

가로 폭 30cm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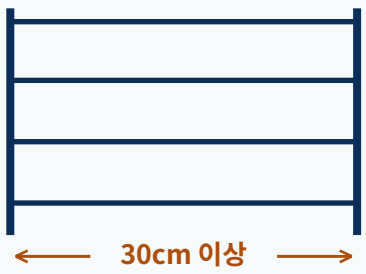

걸쳐놓은 지점 위 60cm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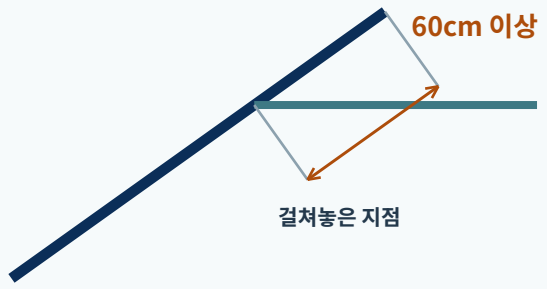

길이 10m 이상: 계단참 간격



예시: 통로 길이 10m / 5m씩 구분

계단참은 5m 이내마다

수평면 기준 기울기



75도 이하

고정식 90도 이하

고정식 높이 7m 이상



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도식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 · 조문 원문 전체

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6. 28.>

1. 견고한 구조로 할 것
2. 심한 손상 ·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
3.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
4.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**15센티미터 이상**의 간격을 유지할 것
5. 폭은 **30센티미터 이상**으로 할 것
6.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
7.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**60센티미터 이상** 올라가도록 할 것
8.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**10미터 이상**인 경우에는 **5미터 이내마다** 계단참을 설치할 것
9.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**75도 이하**로 할 것. 다만,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**90도 이하**로 하고, 그 높이가 **7미터 이상**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

가.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: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**2.5미터**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

나.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: **한국산업표준**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**한국산업표준**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**전신안전대**를 사용하도록 할 것

10.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

② 잠함(潛函)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 · 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(건조 · 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조문 화면: 시행 2025. 9. 1. · 대조 2026. 10. 29.